

어촌 지키는 어항

- 管理施策と細部推進方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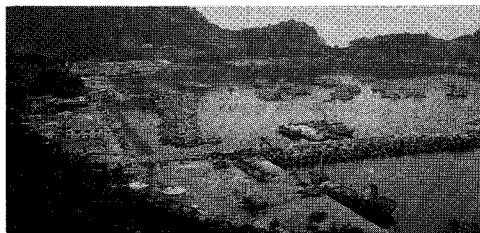
어항시설의 관리는 무엇보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항을 이용하는 다수의 어민들이 그 지역내의 어항시설을 내것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주인의식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다.

기호준 / 수산청 시설관리과 서기관

어 항은 어업활동
근거지로서 어 선을 비롯한
어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각종 선수품의
공급 및 어획한 수산물의
유통과 출어준비, 어민들
식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

또한 어항은 어촌의 핵심지로서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관광을 즐기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어항은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일 뿐만 아니라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꽤



적한 휴식·휴양공간으로 제공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2종 어항은 시·도지사가 지정
·개발·관리한다.

어학의 현황

어항의 종류

어항은 제1종 어항과 제2종 어항, 제3종 어항등 3종류로 구분된다. 제1종 어항이란 그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을 의미하며, 제2종 어항이란 그 이용범위가 지역적인

어항을, 제3종 어항이란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
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말한다.

제1·3종 어항은 수산청
장이 지정·개발·관리하고,
2종 어항은 시·도지사가 지정
·개발·관리한다.

어항의 수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408 개의 어항이 지정되어 있다. 그 중에 1종 어항이 51개소, 2종 어항이 323개소, 3종 어항이 34개소이다. 또한 시·도별로는 총 어항 수 408개 소 중 전남이 32.1%인 131 개소, 경남이 20.3%인 83개 소로 52.4%인 214개소가 남해지방에 소재하고 있음을 보

지정어항 현황

| | 계 | 부산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계 | 408 | 15 | 33 | 11 | 26 | 35 | 18 | 131 | 35 | 83 | 21 |
| 1종 | 51 | 1 | — | — | 10 | 4 | 1 | 10 | 9 | 11 | 5 |
| 3종 | 34 | — | — | 4 | — | 1 | 4 | 15 | 2 | 6 | 2 |
| 2종 | 323 | 14 | 33 | 7 | 16 | 30 | 13 | 106 | 24 | 66 | 14 |

여주고 있다.

어항의 시설

수산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1·3종 85개소에는 외곽시설이 129식에 31,185m, 어선계류시설이 95식에 23,374m, 어항부지가 226필지에 381,234평, 각종 기능시설이 70동에 15,780평, 항내 수면적이 1,980ha 설비되어 있다.

또한 기능시설은 위판장이 61개소에 38,956m², 급유시설이 42개소에 54,610D/M, 급수시설이 11개소에 11,084D/M, 제빙시설이 16개소에 630D/M,

냉동·냉장시설이 34개소에 56,556톤, 저빙시설이 15개소에 11,675톤, 창고가 22개소에 3,399m², 어선수리소는 38개소가 설비되어 있다.

제1·3종어항시설 관리체제

어항법 제4조에 수산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제1·3종 어항은 어항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어항 사무소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가 위임되었다. 그리고 위판장, 물량장, 수역시

설 등 어항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는 어항법 제28조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항시설은 수산청과 어항사무소,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포함),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어항시설 사용자가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어항시설 관리시책

목 표

정부는 어항시설관리 목표를 “어항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WTO체제의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와 대어민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정하였다.

방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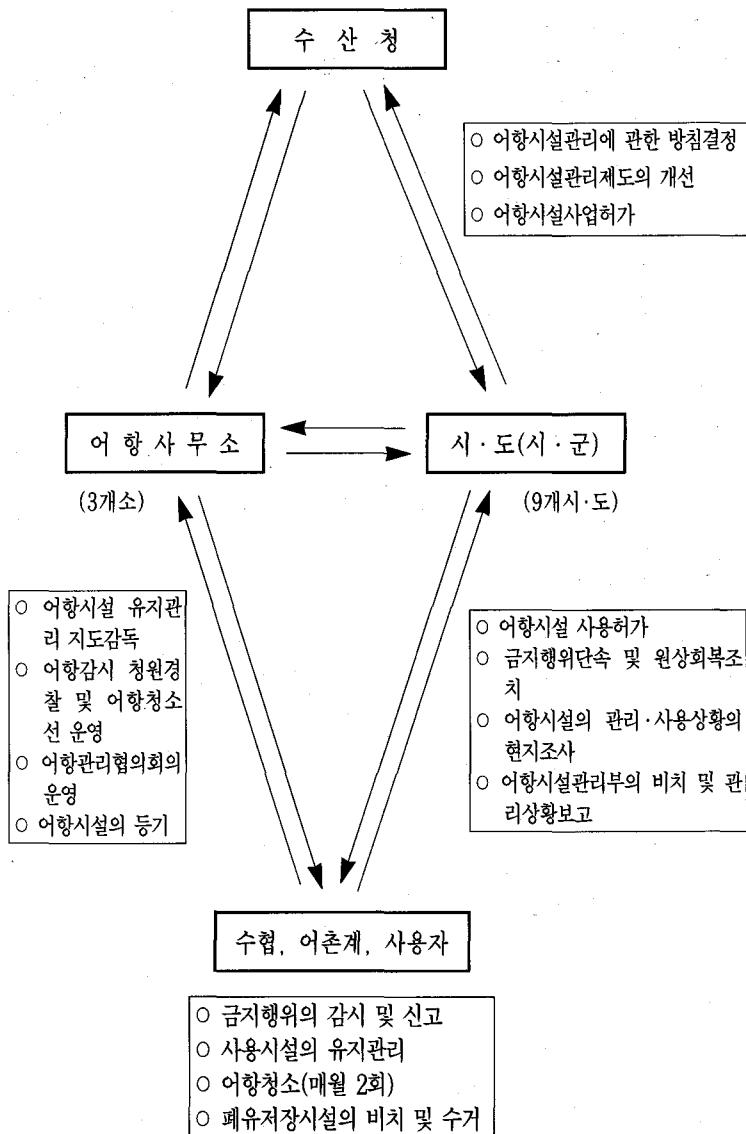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첫째로 국가의 어항시설 관리 시책에 대한 관련 공직자의 실천의지를 강화하고, 둘째로 어항시설 사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셋째로 쾌적한 어항환경을 조성하고, 넷째로 어항기능시설

어항 기능시설 현황

('94.12.31현재)

| 시설명 | 수 량 | 면 적 | 금 액(백만원) |
|---------|--------------------|---|------------------|
| 계 | 건물 70동 부지 219필지 | 52,167m ² 1,190,012m ² | 30,596 19,113 |
| 위판장시설 | 32동 | 22,621m ² | 5,148 |
| 공동창고 | 9" | 2,136" | 296 |
| 제빙·냉동시설 | 3" | 4,954" | 1,400 |
| 수산물처리가공 | 5" | 1,524 " | 452 |
| 수산물판매장 | 5" | 12,499" | 1,958 |
| 어민복지시설 | 15" | 7,819" | 2,120 |
| 관리시설 | 1" | 614" | 109 |
| 어항시설부지 | 219 필지 | 1,190,012" | 19,113 |

<어항시설 관리 체계도>



도 및 수협중앙회에 통보하여 기관, 단체별로 자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시달하였다. 그러나 어항시설의 관리는 무엇보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항을 이용하는 다수의 어민들이 그 지역내의 어항시설을 내 것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주인 의식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다.

세부추진시책

어항시설관리 시책에 대한 실천의지를 강화하는 방안

어항시설의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수산청과 어항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그리고 어촌계가 있다. 또한, 각 부서간에는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업무분담 체제를 갖추고 상호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일선에서 어민과 더불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의 공무원과 수협의 임직원들이 국가의 어항관리 시책에 대한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자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에 발견된 문제

및 부지시설을 확충해 가며, 다섯째로 어항관리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섯째로 각급기관에서 추진한 당해년도의 어항시설관리 실

적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정부에서는 금년초에 이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어항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어항사무소와 시·

점에 대하여는 보완 방안을 강구 시행하거나 수정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외에도 유관기관과 단체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회의, 행사, 모임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어업인 주민등 어항 시설 이용자에게 어항시설이 자기시설이라는 인식을 갖고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서 어항시설관리 시책은 관내의 언론 매체인 T.V, 라디오, 수산전문지등에 홍보함은 물론 관내의 영향력 있는 인사등을 통하여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어항시설 사용질서 확립대책

정부에서는 금년을 “어항시설 사용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였다. 그리고 산하기관과 산하단체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어항시설 사용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일선기관인 시·도와 시·군,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어항시설 불법사용을 발견하면 먼저 자진 철거토록 지도하되 비협조자에 대하여는 사직당국에 고발하여 다시는 불법사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도와 시·군에서는 관내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

불시 또는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서 어항출입구에 대형 어항 안내판을 설치하여 어항이용자에게 불법 사용억제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고, 수협 및 어촌계 임직원, 시설사용자에게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어항관리책임자가 휘장을 착용하고 어항구역에 대한 일일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시책을 어업인이 이해해서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하겠다.

쾌적한 어항 환경 조성 방안

어항구역 등 육지에 대하여는 매월 2회이상 어항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시설사용자가 소속 임직원 참여하에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수역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94~’95년도에 건조한 어항청소선 7척을 남해에 3척, 동해에 2척, 서해에 2척을 배치하여 어항수역내에 떠 있는 부유물과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오·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또한 어항을 출입하는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항별로 폐유

저장 시설 설비 기준을 정하여 어항을 관리 이용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에 통보, 공드럼 철제용기등 저장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유후유 500드럼 이상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11개소와 1개지소를 대상으로 유후유 공급량을 50%이상을 수거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유후유 공급과 폐유 반납 연계제도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어항내에서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간에 유류제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이 유흡착제, 오일펜스와 유처리제등을 비치, 관리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어민교육 실시시에 어민들이 폐유를 해양에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항기능시설 및 복지시설의 확충방안

어항내의 기능시설 및 복지시설등이 부족하여 어항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어항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총 사업비 30%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3년거치 7년상환, 연리5%의 저리 읍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에 지원되는데 어선수리장, 어구건조장, 어구제작장등 어선, 어구보전시설과 급유시설, 급수시설등 보급시설은 물론 선어위판장, 활어위판장, 수산물직매장등 수산물 처리가공시설을 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등이 자자자금을 들여서 어항시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항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어항시설 사업계획허가를 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어항을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이 그의 형편에 맞게 어항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어항관리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어항관리협의회는 동·서·남해의 어항사무소 주관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수산과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어촌계장, 어민등으로 구성된다. 어항관리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개최되며, 이 회의에서는 지구별 수산업협동

조합이 그동안의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을 보고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어항시설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며, 어항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기관, 단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도 보고 또는 토의된다.

그러므로 어항관리협의회는 지역내의 기관장 및 단체장, 실무부서의 장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이므로 지역내 어항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지역내의 어항관리에 관한 문제를 지역 책임하에 스스로 협의 처리토록 하고 있다.

어항시설관리 실적평가 방안

정부에서는 금년초에 어항시설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 어항관리 실무자 회의를 소집,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실천 의지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시·도에서는 금년도의 추진 실적을 자체 평가한 후에 그 내용을 금년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인 어항관리 실적 평가회의에서 보고토록하여 잘된 점은 다음년도 시책에 반영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수정·보완토록 하고 다른 시·도의 우수관리사례를 자기

시·도에 응용 활용토록 함은 물론 어항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들에게 어항시설 관리에 관한 실천의지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협력해야 할 사항

어항시설은 다수의 어민들이 이용하는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에 어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인의 이익실현을 위하여 불법으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어선의 입·출항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방치해서도 안되며 어항수역내에 폐선을 버리거나, 어항시설을 훼손, 파괴하는 행위,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등은 금지해야 한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한자는 어항법 제32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민들은 어항시설이 “우리자신의 시설임”을 인식하고 시설물을 아끼고 동시에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로 보전,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 ◉